

별첨2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안건별 주요내용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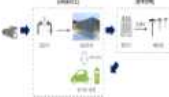
□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마소모토	(대면1호)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실증특례) ⇒ 자율주행 트럭 화물 운송 실증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 안전성 검증 → 연료절감 및 물류산업 성장에 기여, 안전사고 예방 (신청내용) 유인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선 도로 내 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 (관련규제) ①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가능, ②'임시운행허가'의 경우 유상운송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송 가능 * 시범지구 신청권한은 사도지사로 제한(자율주행자동차법 및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①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보험 가입, ②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 이용 등의 조건으로 수용(국토부) (전문위 결과) 상용목적의 자율주행 트럭 실증레코드 확보를 위해 임시운행 허가 획득, 보험가입 등 조건으로 특례 승인 (예상결론) 국토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대면2호)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실증특례) ⇒ LNG 공급과정(기체화)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저탄소 청정수소* 생산 및 극저온(-253도) 액화공정에 활용 → 생산비 절감 및 CO ₂ 감축에 기여 * 초저온(-163도)으로 냉각되어 있는 LNG의 기체화(NG)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에너지 ** 생산공정 : 천연가스→수소추출(냉열활용) → CO ₂ 포집·액화저장(냉열활용) → 액화수소(냉열활용) (신청내용)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LNG터미널↔ 청정수소 플랜트간 ①전용배관 설치 및 ②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관련규제) ①LNG 터미널 사업소 외 LNG 공급 배관 설치기준 부재,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 품질기준 부재(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②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용기밸브 등) 기술기준 등 부재(고압가스법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LNG 배관 및 플랜트 실증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등 조건제시(산업부) (전문위 결과) 청정수소 및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생산 시설의 시험·안전성 검증 필요성 인정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영무파라드 등 4개사	(대면3~6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 ⇒ 식품접객업소에 보호자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 → 영업장의 위생 및 서비스 안전성 평가 (신청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의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여야 함(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반려동물의 출입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 선택 가능하도록 조치 실행, 식품위생·전염병 예방 등 관리 필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제시 및 준수(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전문위 결과)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실증 필요성 인정 (예상결론) 식약처의 부가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서면1호)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 안전성 및 효과성 실증 (신청내용)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관련규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안전기준(KC-61851-22)에 부적합하여 KC인증 불가(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안전성검증 방법 마련, 공인 시험기관 통과 등 조건부 수용(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문위 예상 결과)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의 실증 필요성 인정 (예상결론) 국표원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에바	(서면2호) 자율주행 로봇 활용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승인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자율주행로봇을 결합한 형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테스(22)등 / 자율주행로봇: 인티그리트(22)등 ⇒ ESS 탑재 자율주행 로봇이 실외 주차장 내에서 이동하여 충전서비스 제공 → 사용자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수행 (신청내용) ESS가 내장된 자율주행 로봇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동하여 디스펜서와 연결되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 (관련규제) ①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안전검사 기준 부재(전기안전관리법), ②전기저장장치(배터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기준이 고정식에 한정(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③정보주체 동의 없이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개인정보보호법) (관계부처 의견) ①육외 사용 및 정치형 배터리 기준 준수(산업부), ②기존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국표원), ③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 준수(개보위)등 조건 제시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건과 유사안건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국표원·개보위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3호)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22년(이테스, SK E&S)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동일 ⇒ 이동형 전기차 충전을 탑재한 트럭을 활용하여 충전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실증 → 만족도 조사 수행 (신청내용) 이동형 충전시스템(전기저장장치+충전기)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충전서비스 제공(일회성, 정기구독, 야외임시충전소) (관련규제) ①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안전검사 기준 부재(전기안전관리법), ②전기저장장치(배터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기준이 고정식에 한정(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①육외 사용 및 정치형 배터리 기준 준수(산업부), ②기존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국표원) 조건 제시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건과 유사안건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국표원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네이버랩스	(서면4호) 자율주행 배달로봇(실증특례) ※ '19년(로보티즈), '21년(KT) 등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 ⇒ 자율주행 로봇이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며 건물 내 이용자에게 음식배달 서비스 제공 →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신청내용)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서 최대 3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 (관련규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 불가능(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관계부처 의견) ①주행안전성 확보*(경찰청·행안부), ②개인정보 보호조치(개보위) 등 조건부 실증특례 수용 * 안내판 설치, 카메라 임의조작 금지, 녹음 금지, 관리감독체계 마련, 수집 정보 비식별 처리, 목적외 사용금지, 원본정보 저장·전송 금지, 개보위 점검 협조 등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건과 동일안건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개보위, 행안부, 경찰청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5~6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임시허가) ※ '20~'22년 11개社(현대차·테슬라 등)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 ⇒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신청내용)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통해 운전자가 직접 업데이트 (관련규제)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 등 정비작업 또는 점검작업 불가(자동차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업데이트 사항 국토부에 제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 할 것 등 조건을 전제로 임시허가 수용(국토부)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건과 동일안건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임시허가 허용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SK에너지	(서면 7호)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실증특례) ⇒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전력자립도 개선 기여 (신청내용) LPG충전소 유희공간에 소규모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한전에 판매 (관련규제)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설치 불가(액화석유가스법) (관계부처 의견) 충전시설 및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수용(산업부) * 충전시설(LPG충전소) 안전관리체계 준수, 연료전지 설치관련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위원회 구성 및 안전성 검증 등 (전문위 결과) 충전시설 보호조치, 수소연료전지 설치 관련법령 준수, 안전성 검증 등을 조건으로 특례 승인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8호)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실증특례) ⇒ 친환경 동력원인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선박 및 선박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준 마련 →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기여 (신청내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길이 16m미만, 무게 19톤, 10인승)과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관련규제) ①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선박안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기준 부재(용·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관계부처 의견) ①선박용 연료전지 및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산업부), ②항후 관련 안전기준 공고시 기준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해수부) (전문위 결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및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예상결론) 해수부,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한국가스공사	(서면9호) 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특례) ⇒ T/T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 위험 방지 가능 및 소비자 대상 수소 가격 인하에 기여 (신청내용) 충전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튜브트레일러(T/T)에 저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T/T를 이용하여 수소차량에 충전 (관련규제) 제조식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은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식만을 규정 → T/T 사용 시 현행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 발생(고압가스법) * 튜브트레일러의 충전장소와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하여 별도 운영 필요 (관계부처 의견) ①안전관리 방안 마련,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③검증 등의 조건으로 수용(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전문위 결과) 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기준 수립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서면10호)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실증특례) ⇒ 대용량* 저장·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 유통시스템 실증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 수소산업 경제성 제고 * 1회 운송량 : (기체수소) 300kg → (액화수소) 3톤 (신청내용)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운송, 충전소 공급, 생산플랜트로 이동하는 액화수소 유통 전과정의 안전성 검증 (관련규제) 액화수소 용기 및 용기 제조시설, 운반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부재(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의 실험기준 준수 및 탱크로리 등 제품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검사수검 조건 제사(산업부) * 액화수소 운송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전자 교육 등 (전문위 결과) 액화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대용량 액화수소 운송수단 및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에 대해 인정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면11호)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실증특례) (서면12호)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실증특례) ※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2.2월, 전기연) 승인안전과 유사 ⇒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개발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 (신청내용) 연구개발용 수소건설기계(굴착기) 수소충전을 위한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규제) ①현행 '수소충전소'는 '자동차'에만 충전 가능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②굴착기용 수소연료전지의 안전·검사기준 부재(수소법) (관계부처 의견) ①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②지게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기준 준용, 굴착기 작동특성 등을 반영한 추가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 조건제시(산업부) (전문위 결과) ⑬번 안전 :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⑭번 안전 : 굴착기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시험·검증을 통한 트랙 레코드 축적 필요성 인정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13호)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실증특례)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21. 9월, SK E&S) 승인안전과 유사 ⇒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충전 대기시간 감소 등 수소버스 등 상용차 수소충전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 대기압(1bar~3bar)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하는 액화수소는 위험성이 낮음 (신청내용) 액화수소 플랜트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수소를 저장, 기화하여 버스 등 수소상용차에 충전하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규제) 액화수소 충전시설 관련 기술기준 등 안전기준 부재 (고압가스법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액화수소충전소 2개소 시범 운영(2개월간), 실증단계별 안전성 검증 등 조건제시(산업부)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유사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주)	(서면14호)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활용 수소생산 실증(실증특례) ※ 'PEM 수전해설비 실증특례'(22. 4월, 해일로하이드로젠) 승인안전과 유사 ⇒ 고성능 수전해 설비 실증으로 안정적인 수소 생산기반 마련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청내용) 물을 전기분해하여 일평균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PEM* 수전해 설비(2.5MW)를 해외 도입후 구축 및 운영 * 고분자 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수전해설비의 국내업체 기술은 상용화 전단계 (관련규제) 수전해 설비내 고압스택*(1MPa ↑)은 압력용기로 분류, 안전검사가 필수적이나, 현행 파열시험 기준 적용 곤란 (고압가스법시행규칙) * 미국, 유럽은 '수전해 부품'으로 분류 → 압력용기 검사규정의무 無 (관계부처 의견) 수소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압력용기와 동등수준* 이상의 고압스택 안전성 확보 등의 조건 제시(산업부) *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 검증방안 마련,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유사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15호) 다차중·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 승인안전(충방전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과 유사 ⇒ 다차중·동시·고속 충전을 통한 수소충전소 대기 시간 단축 및 한국형 수소 충전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국내 및 국제 표준 정립에 기여 (신청내용) 다차중·동시·고속 충전이 가능한 수소스테이션 구축 및 실제 차량* 충전에 대한 실증 * ①수소모빌리티의 모사장치 충전을 통해 안전성 검증 후 ②실제 차량에 충전 예정 (관련규제)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만 충전 가능 → 모사장치 및 수소모빌리티(굴착기, 지게차, 트랙터) 충전 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①충방전 모사장치 및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등의 조건으로 수용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전문위 결과) 다양한 유형의 수소모빌리티가 개발됨에 따른 동실증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성신양회	(서면16호) 폐기물 처리 기술을 활용한 폐육불화황 가스 처리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 6대 온실가스인 육불화황을 초고온 플라즈마 처리기술을 통해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 → 친환경 산업전환 및 탄소중립 기여 (신청내용) 폐 육불화황(SF₆)을 초고온 플라즈마 및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여 열분해 후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 (관련규제) 육불화황에 대한 처리 기준 부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①폐육불화황 투입 공정 관리일지 작성, ②가스 누출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수용(환경부) (전문위 결과)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쏘단계 모니터링, 소성로 안전성 점검, 투입비율 제한 등을 조건으로 특례 승인 (예상결론) 환경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서면17호)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실증특례) ⇒ 직류 송전거리를 단축시켜 기존 육상전기실 대비 해양 태양광 발전 전력손실 최소화 →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신청내용) 해상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 계통으로 송전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의 효율성 및 안정성 검증 (관련규제) ①해상 시공환경에 맞는 사용전검사 기준(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및 ②정기검사 기준 부재(전기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 안전기준 준용,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표시(접근금지 등) 설치 등 조건부 수용(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전문위 결과) 다양한 기상 환경에서 부유식 해상 전기실의 안전성 및 송전 데이터 등을 검토·분석하기 위한 실증 필요성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SK에코플랜트, 그리드위즈 (컨소시엄)	(서면18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이용한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실증특례) ※ '21년(대경엔지니어링,부산정관에너지)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수소연료전지 발전전력을 이용하여 V2G 양방향 충전시스템 실증 → 지역수요 연계형 전력공급 활성화 (신청내용) 동전일반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및 V2G 충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충전소 실증 및 운영 (관련규제)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 불가(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예비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증(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국표원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서면19호)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및 전동운송기기 제작·운영 (실증특례) ※ '21~'22년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SK온 등) 관련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등 전기공급시스템 및 전동 운송기기 제작 → 자원순환 및 배터리 재활용시장 활성화 (신청내용)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정전 대비용 전원장치(UPS), 전기 지게차 등 전동 운송기기 검증 (관련규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KC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 부재(산업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예비안전기준('22.6) 적용 및 ESS, UPS 등 옥내설치 금지 등 조건 제시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유사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투지 (컨소시엄)	(서면20호)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21년(서울에너지공사,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동일 ⇒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전기차에 유상 충전 서비스 제공 → 전력손실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신청내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또는 ESS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스템 운영·실증 (관련규제) 직접 전력거래 불가(전기사업법) (관계부처 의견) ①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②한전 기본공급약관 준수, ③ESS 설치 장소 등 운영관련 안전사항 준수 등의 조건으로 수용(산업부)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유사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서면21호)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 (실증특례) ※ '21년(LS전선)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PE(폴리에틸렌)케이블은 화학적 가교공정*이 필요하나 PP 케이블은 가교공정이 필요 없어, 탄소배출 40% 저감 → 탄소중립 기여 * 가교공정: 내열성이 낮은 PE를 고온·고압에서 분자구조를 바꾸어 내열성을 높이는 공정 → 다량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신청내용) 친환경 소재인 PP를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을 구축 예정인 한전 송전선로에 적용 (관련규제)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에 PP 케이블이 미포함되어 사용 불가(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 (관계부처 의견) 전기설비규정 등 설치기준 준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을 것 등 조건부 허용(에너지안전과) - 단, KS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검증 필요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산업부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플랜드비뉴 등 4개사	(서면22~25호)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포장재 사용저감 등 친환경 소비 확대 가능 (신청내용) 대용량 용기에 담긴 위생용품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및 판매 서비스 (관련규제) 위생용품을 소분할 수 있는 영업자는 위생용품제조업으로 규정 → 판매업자는 소분불가(위생용품 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①위생관리 및 ②표시사항 제공, ③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등 조건부 수용(식약처) (전문위 결과) 위생용품 리필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성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 (예상결론) 관계부처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서면26~43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실증특례) ※ '20년(아모레퍼시픽 등)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제공 (신청내용) 설문조사 및 1:1 대면상담 등으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 진행 (관련규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건강기능식품법), 제품에 의무 표시사항을 인크로 인쇄·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의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관계부처 의견) 기존 승인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식약처)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식약처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CJ헬케어 등 12개사	(서면44~55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실증특례) ※ '21년(폴무원녹즙 등)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등 소분)과 일반식품(음료 등)을 한 제품에 섭취하는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신청내용)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제조하여 온·오프라인 등 으로 판매 (관련규제)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소에서는 건강 기능식품 소분·제조 불가(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만 위탁제조 가능(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한 제품정보 표시기준 없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계부처 의견) 기존 승인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식약처)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식약처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아이디버스 등 11개사	(서면56~66호) 공유미용실 서비스(실증특례) ※ '20~'21년 실증특례 승인안전(제로그라운드 등)과 동일 ⇒ 권리금, 임대료, 인테리어비 등의 비용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 (신청내용) 1개 사업장내 다수 미용사가 입주,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 개별사업자로 영업하면서 삼푸실·열펌기계 등 설비·시설 공유 (관련규제) 1개 사업장내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시설·설비 공유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관계부처 의견)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공동책임 등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복지부)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동일·유사 과제로 既 승인 과제와 동일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기업(기관)명	주요내용
 이지돔코리아	(서면67호)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실증특례) ※ '20, '22년 실증특례 승인안전(돔아일랜드 등)과 유사 ⇒ 글램핑 야영장에 천막 소재 이외 돔 형태의 친환경 소재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연관산업 활성화 (신청내용) 친환경적인 소재(합성수지 HDPE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판매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화학성분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합성수지 (관련규제) ①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여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등 소재에 대해서만 규정(관광진흥법) ②조립식 돔텐트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호(건축법) (관계부처 의견) ①실증기간 2년(年최대 200개),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 등 조건 전제로 수용(문체부) ②해당 신청 건에 한해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야영시설로 설치 가능(국토부)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동일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관계부처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주)라이브몰로	(서면68호)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실증특례) ※ '22년(에드) 실증특례 승인안전과 유사 ⇒ AI기술을 활용하여 매장 방문 및 활동 데이터 수집 → 상품· 전시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분석 (신청내용) 매장·갤러리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여 마케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안전성 실증 (관련규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외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 설치·운영 불가(개인정보보호법) (관계부처 의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수용(개보위) * 촬영 안내판 설치,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 및 운영, 카메라의 임의조작 금지, 녹음 불가, 운영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데이터의 파기 및 익명 처리, 개보위의 점검요청 시 협조 등 (전문위 결과) 既 승인 안전과 유사안전으로 전문위 생략 (예상결론) 개보위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